

제주지방법원 2019. 12. 17 선고 2018가단569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11. L

12. M

13. N

14. O

15. P

16. Q

17. R

18. S

19. T

20. U

21. V

22. W

23. X

24. Y

25. Z

26. AA

27. AB

28. AC

29. AD

30. AE

31. AF

32. AG

33. AH

34. AI

35. AJ

36. AK

변론 종결 2019. 11. 26.

판결 선고 2019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2016. 8. 21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피고 B, G, H, I, K, L, M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머지 피고들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이혜진

별지